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고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여성위원을 4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제

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¹⁾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9명을 초과하거나 9명이 안된 채 “인사위원회 회의”를 구성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촉위원, 여성위원 또는 지방의회 추천 위촉위원의 의무적인 구성인원을 포함하지 않는 등 불임과 같이 “인사위원회 회의”를 부적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여 “인사위원회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성남시, 포천시 등 5개 시·군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6명 미만으로 구성하거나(양주시, 양평군), 여성위원을 3명만 위촉한 채(성남시, 포천시, 하남시)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양시장, 의정부시장, 광명시장, 부천시장, 김포시장, 성남시장, 안성시장, 양주시장, 양평군수, 여주시장, 용인시장, 의왕시장, 이천시장, 포천시장, 하남시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구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관계 규정을 위배하여 부적법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함